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주간보호)

효누리노인복지센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 -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됩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5	2,306,400 원	2,083,400 원	1,485,700 원	1,370,600 원	1,177,000 원	657,400 원
2026	2,512,900 원	2,331,200 원	1,528,200 원	1,409,700 원	1,208,900 원	676,320 원
증가액	206,500 원	247,800 원	42,500 원	39,100 원	31,900 원	18,920 원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등급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3시간미만	1등급	32,520 원	0 원	33,460 원	0 원
	2등급	30,100 원	0 원	30,980 원	0 원
	3등급	27,790 원	0 원	28,590 원	0 원
	4등급	26,530 원	0 원	27,300 원	0 원
	5등급	25,260 원	0 원	25,990 원	0 원
	인지지원등급	25,260 원	0 원	25,990 원	0 원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40,650 원	0 원	41,820 원	0 원
	2등급	37,630 원	0 원	38,720 원	0 원
	3등급	34,740 원	0 원	35,740 원	0 원
	4등급	33,160 원	0 원	34,120 원	0 원
	5등급	31,580 원	0 원	32,490 원	0 원
	인지지원등급	31,580 원	0 원	32,490 원	0 원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54,490 원	0 원	56,060 원	0 원
	2등급	50,470 원	0 원	51,930 원	0 원
	3등급	46,590 원	0 원	47,940 원	0 원
	4등급	45,000 원	0 원	46,300 원	0 원
	5등급	43,400 원	0 원	44,650 원	0 원
	인지지원등급	43,400 원	0 원	44,650 원	0 원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67,770 원	0 원	69,730 원	0 원
	2등급	62,780 원	0 원	64,590 원	0 원
	3등급	57,960 원	0 원	59,640 원	0 원
	4등급	56,380 원	0 원	58,010 원	0 원
	5등급	54,780 원	0 원	56,360 원	0 원
	인지지원등급	54,780 원	0 원	56,360 원	0 원
10시간이상 ~ 13시간이하	1등급	74,660 원	0 원	76,820 원	0 원
	2등급	69,160 원	0 원	71,160 원	0 원
	3등급	63,900 원	0 원	65,750 원	0 원

10시간이상 ~ 13시간이하	4등급	62,290 원	0 원	64,090 원	0 원
	5등급	60,710 원	0 원	62,460 원	0 원
	인지지원등급	54,780 원	0 원	56,360 원	0 원
13시간초과	1등급	80,060 원	0 원	82,370 원	0 원
	2등급	74,170 원	0 원	76,310 원	0 원
	3등급	68,520 원	0 원	70,500 원	0 원
	4등급	66,930 원	0 원	68,860 원	0 원
	5등급	65,350 원	0 원	67,240 원	0 원
	인지지원등급	54,780 원	0 원	56,360 원	0 원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은 2026.01.01 시행되며, 2026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29일

효누리노인복지센터 대표자 김지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 6 %

[별표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 비급여 수가

비급여 청구 항목	금액	비고
① 식사재료비	점심 : 3000 원 저녁 : 3000 원	* (1식) 기준으로 계산
② 이,미용비(월)	0 원	* (1개월) 기준으로 계산
③ 간식비	700 원	* (1식) 기준으로 계산

1.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2) 세부기준
 - ①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②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2) 세부기준
 -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